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8
----------	-----

2021. 3. 2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년 3월 12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경화 농정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관련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명시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유기”, “사업자” 정의 개정(안 제2조)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

-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의무조항 신설(안 제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추이는 '09년 최고치 기록 후 저 농약 인증 폐지로 감소되다가 최근 몇 년 간 소폭 증감을 반복,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과 유기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친환경농산물 시장 : ('15)1.3조→ ('16)1.4조→ ('18)1.8조→ ('20)2.5조→ ('25)4조

※ 유기농식품 시장 : ('10)3,777억원→ ('15)5,781억원→ ('20)6,817억원

-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은 과거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에서 건강한 생태계 유지 등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에 맞게 우리도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유기(Organic)”, “유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19.8.27.(시행 : '20. 8.28.) “친환경농어업”, “유기” 정의를 개정함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용어 정의를 농어업을 통한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의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확대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시행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친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12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3)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업 가공·체험·관광 기반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로, 같은 조 제6호 중 “유기식품등을”을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로 한다.

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법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

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중 “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을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로 한다.

제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를“ 「물환경
보전법」 제5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생산자
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업 가공·체험·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친환경농업”이란 <u>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u></p> <p>2. “친환경농산물”이란 <u>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u></p> <p>3. (생 략)</p> <p>4. “유기[Organic]”란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p>	<p>제2조(정의) ----- -----.</p> <p>1. “친환경농업”이란 <u>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u></p> <p>2. “친환경농산물”이란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유기”(Organic)란 <u>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법 제19조제2항</u></p>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5.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

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

6. -----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신설>

1. 7. (생략)

제7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농약관리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내용)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업실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7. (현행과 같음)

제7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환경보전법」 제58조,

-----.

제12조(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등 생산·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p>② · 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u> 2. <u>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지원</u> 3. <u>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u> 4. <u>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u> 5. <u>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u> 6. <u>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u> 7. <u>친환경농업 가공·체험·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u> 8. <u>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u> 9. <u>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 지원</u> 10. <u>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관련법령 발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 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시행 2018. 1. 18 / 2017. 1. 17, 일부개정)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